

④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· 양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. 다만,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6개월의 기간이 지나야 한다.<[신설 2011. 12. 31., 2012. 12. 6., 2019. 6. 28., 2025. 10. 31.](#)>

1.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: 그 허가를 받은 날. 다만, 법률 제7100호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」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 · 수탁차주에 대한 허가로 인하여 차량을 충당한 경우는 그 차량 충당의 변경 신고일로 한다.

2.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: 양도 · 양수신고일

⑤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 해당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집화등만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에게만 양도하여야 한다. 다만, 지역 간 수급 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해 관할관청 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관할관청이 관할하는 지역으로 양도할 수 있다.<[신설 2012. 12. 6.](#)>

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양도금지의 기간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할 수 있다. 다만,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.<[신설 2011. 12. 31., 2012. 12. 6., 2013. 3. 23., 2014. 9. 19., 2015. 12. 31., 2019. 6. 28., 2025. 10. 31.](#)>

1. 삭제<[2015. 12. 31.](#)>

2. 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우수물류기업(운송사업자만 해당한다)에게 양도하는 경우

3.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전할 수 없는 경우

가.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

나. 해외이주에 따라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

다. 삭제<[2018. 12. 31.](#)>

4. 그 밖에 화물운송실적, 화물운수서비스,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

5. 운송사업의 양수를 통해 별표 1의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게 되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

⑦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법 제3조제12항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양도 · 양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[신설 2016. 1. 7., 2018. 12. 31.](#)>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**제24조(법인합병 신고)**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법인합병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법인합병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관할관청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.

1. 합병계약서 사본

2.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

3. 공증인의 인증이 있는 정관 사본(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)

4. 합병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

[전문개정 2010. 12. 29.]

**제25조(상속 신고)**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상속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상속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고인과 피상속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2. 신고인과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동의서

3.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